

## 【 7 】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2003. 2. 25

제 출 자 양 주 군 수

### □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양주군미술장식심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심의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가. 미술장식의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주는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검사예정일 9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군수는 미술장식 심의를 받은 미술장식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전에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함(안 제6조)
  - 조례 제2조제1호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 조례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
- 라. 군수는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양주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양주군조례 제 호

##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군수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위락시설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 ①군수는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며, 당해 건축물과의 조화와 예술성을 갖추고 양주의 향토색을 살린 작품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건축주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검사 예정일 90일전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양주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그 심의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미술장식의 설치확인)** 군수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미술장식에 대하여 당해건축물의 사용승인검사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설치검사신청서를 접수받아 7일이내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장식의 가격결정등)** ①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계약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①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2조제1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2.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

②제1항의 "건축비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미술장식의 사후관리)** ①건축주는 미술장식 설치검사일까지 현장관리자 1인을 선임하고 설치검사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설치된 미술장식을 임의로 철거, 훼손, 용도변경 할 수 없다.

**제8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군수는 영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평가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양주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해당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2.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3.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위원은 문화관광사업소장, 주택과장과 양주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회의원 2인과 미술장식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및 보궐위촉)**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거주이전등으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
4. 기타 해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의하여 해촉된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보궐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양주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이전에 양주군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설치중인 미술장식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미술장식설치계획 심의신청서

건 축 개 요	위 치					
	건 축 주			주 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총 수		최고높이		구 조	
	용 도		의장재료		건축종별	
	허가(승인) 일 자		사용검사 예 정 일		총공사비	
건 축 설 계 자	주 소					
	사무소명		대 표 자		전 화	
미 술 장 식 개 요	작 가 명		작 품 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 격	
	작 가 명		작 품 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 격	
	작 가 명		작 품 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 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 가 액			설치예정일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신청인			(인)			
양 주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미술장식설치계약서 1부. 2.작가경력서 1부. 3.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도면 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 건축물중 일부만 미술장식설치 대상인 경우 총공사는 해당부분만의 공사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 미술장식설치(준공)검사 신청서

미술장식품 설치위치		건축주	
건축물명		건축공사기간	
미술장식품 개요			
미술장식품 종류 및 작품명		미술장식품	작품 :
미술장식품 재료		규모	좌대 :
미술장식품 해당면적		미술장식품 설치금액	
미술장식품 심의일자		미술장식품 설치완료일	
미술장식품 설치검사예정일		미술장식품 설치작가	(인)
현장관리자	성명	(연락처: )	
	주소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와같이 미술장식품설치(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200 신청인 (인)			
<b>양주군수귀하</b>			
※ 첨부서류 1.미술장식설치 전,중,후 사진 각 1부. 2.설치완료 사진 5x7(전,후,좌,우,근경,원경)각 2부. 끝.			

【별지 제3호서식】

미술장식관리대장

- 관리번호 :
  - 위치(건물명) :
  - 건축주 :
  - 작품명(작가) :
  - 규격(재료) :
  - 설치검사일 :

- 현장 관리자 :

제17편 사업소 제1장 문화관광사업소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1997. 2. 24  
조례 제1607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군수가 법 제9조 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탁시설
6. 근린생활시설
7. 의료시설중 병원
8.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집회장
9. 운수시설중 철도역사
10. 방송·통신시설

제 3 조(미술장식의 설치) ①군수는 영 제24조 제1항 및 영 제2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 시 군수에게 “별표”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양주군지방건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미술장식품의 설치 확인) 군수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5 조(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등) ①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17편 사업소 제1장 문화관광사업소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 ②군수는 제1항의 미술장식품 가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1,000분의 5이상 100분의 1이  
하
  2. 공동주택(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000분의 1이  
상

부 칙 (1997. 2. 24 조례 제1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편 사업소 제3장 문화관당사업소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별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제3조 제2항 관련)

건축 개요	위 치				
	건축 주	주 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층 수	최고높이		구 조	
	용 도	의장재료		건축종별	
허가일자	사용검사 예 정 일		총공사비		
건축 설계자	주 소 사무소명				
미술품 개요	성 명			전 화	
	작가명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 격
	작가명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 격
	작가명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 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 가 액		설치예정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9					
신청인					
(인)					
양 주 군 수 귀하					
<p>※ 첨부서류 : 1.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 사본 2부.      2. 작가경력서 사본 1부.      3.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도면      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p>					

※ 건축물중 일부만 미술장식품 설치대상인 경우 총공사비는 당해 부분만의  
 공사비를 기재할 것.

##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개정

### □ 개정구분 : 전부개정

### □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양주군미술장식심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심의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가. 미술장식의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주는 미술장식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사용 승인검사예정일 9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군수는 심의를 받은 미술장식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이전에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함(안 제6조)
  - 조례 제2조제1호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 조례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
- 라. 군수는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양주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 □ 개정조례안 : 별첨

###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 예산수반사항 : 4,500천원(50,000원x9명x10회) ⇒ 2003년 제1회추경예산확보

### □ 사전예고결과 : 2002.11.25 부터 12. 24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음